

문서관리번호	2023-0001
최종 수정일	2023.07.31
문서 관리자	동반성장팀

LS ELECTRIC 협력회사 행동 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목차

1. 개요.....	4
(1) 행동규범 목적.....	4
(2) 행동규범 대상.....	4
(3) 책임과 역할.....	4
2. 근로자 인권 존중.....	5
(1) 자발적 근로.....	5
(2) 아동 고용 금지 및 청소년 근로자 관리.....	5
(3) 근로시간.....	5
(4) 임금 및 복리후생.....	6
(5) 인도적 대우.....	6
(6) 차별/괴롭힘 금지.....	6
(7) 결사의 자유.....	6
3. 안전한 작업환경.....	7
(1) 산업 안전.....	7
(2) 비상사태 대비.....	7
(3) 산업 재해와 질병 예방.....	7
(4) 산업 보건.....	7
(5) 육체적 과중 업무.....	8
(6) 기계 및 설비 안전관리.....	8
(7) 위생, 음식, 주거.....	8
(8) 안전보건 교육.....	8
4. 친환경 경영.....	8
(1) 환경 관련 인허가와 보고.....	8
(2) 오염예방과 자원사용 저감.....	9
(3) 화학물질 관리.....	9
(4) 폐기물.....	9
(5) 대기오염 관리.....	9
(6) 제품 및 공정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9
(7) 수자원 관리.....	9
(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10
5. 기업윤리 준수.....	10

(1) 투명경영	10
(2) 부당이익 금지	10
(3) 정보 공개	10
(4) 지식재산권 보호	10
(5)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11
(6) 신원 보호와 보복 금지	11
(7) 책임있는 자재 구매	11
(8) 개인 정보 보호	11
6. 경영시스템	11
(1) 기업의 준수 의지 표명	11
(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11
(3)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12
(4) 리스크 평가와 관리	12
(5) 개선 목표	12
(6) 교육 및 의사소통	12
(7) 임직원 참여	12
(8) 감사 및 평가	12
(9) 시정 조치 프로세스	13
(10) 문서화 및 기록	13
(11) 공급업체 책임	13

1. 개요

(1) 행동규범 목적

LS ELECTRIC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LS ELECTRIC에 재화와 서비스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협력회사(이하 “협력회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령(부패, 경제제재, 강제노동, 안전/보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LS ELECTRIC은 협력회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을 참조 하였습니다. 다만,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2) 행동규범 대상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모든 협력회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3) 책임과 역할

LS ELECTRIC의 협력회사는 경영 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LS ELECTRIC 및 LS ELECTRIC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LS ELECTRIC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 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행동규범 준수여부가 협력회사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본 행동규범을 위반한 협력회사가 적절한 개선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LS ELECTRIC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회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LS ELECTRI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를 통해 본 행동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인권 존중

(1) 자발적 근로

-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 목적의 협박, 강요, 납치, 사기 등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 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② 채용 시 임직원이 이해가능한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③ 외국인 임직원을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 ④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되고, 임직원은 희망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⑤ 채용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2)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 ① 협력회사는 만 15세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최소 노동 연령보다 낮은 연령의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합법적 서류를 통해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② 18세 미만 근로자(청소년 근로자)에게 야간 근무 및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하고 아동노동이 발견된 경우 지원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 ①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무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는 근로자들이 법적 요건에 따라 휴식, 주중 휴무일, 휴가신청, 유/무급 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매 7일마다 최소한 하루의 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 ④ 협력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근로시간 내 약물 또는 음주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합니다.

니다.

(4) 임금 및 복리후생

- ①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할증요율 이상으로 지급하고, 임직원에게 임금에 대한 명확한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는 임시, 파견 및 외주 인력 사용 시에는 현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5) 인도적 대우

- ① 협력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작업장의 가혹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임직원에게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인도적 대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징계 방침과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임직원에게 해당 방침과 절차를 공지해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차별/괴롭힘 금지

- ① 협력회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 또는 괴롭힘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임금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협력회사는 작업환경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위한 목적 외에 임직원이나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7) 결사의 자유

- ①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의거하여 임직원이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하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 시위를 위해 다른 임직원과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단체교섭과 같은 활동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대표자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 대표가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 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자유롭게 건의 하도록 하며, 고충사항 접수시 적절한 고충 처리 Process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3. 안전한 작업환경

(1) 산업 안전

- ① 협력회사는 필요한 모든 보건 및 안전 인허가를 취득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인허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요인에 대한 식별, 평가, 개선을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위험 요소를 제거/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해당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임직원은 자유롭게 안전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비상사태 대비

- ① 협력회사는 천재지변,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산업 재해와 질병 예방

- ①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 보고 장려, 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필요 의료 처치 제공, 사례 조사 및 시정 조치 시행, 임직원 복귀 촉진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시,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산업 보건

- ① 협력회사는 관리 체계에 따라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임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 ② 잠재적 위험은 제거 및 통제해야 하고,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하고 임직원은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직원 보호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 교육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는 필요한 모든 보건 및 안전 관련 허가서를 취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5) 육체적 과중 업무

- ① 협력회사는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장시간 서있는 업무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파악하고, 임직원이 작업위험에 의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6) 기계 및 설비 안전관리

- ①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리적인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는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보호구 착용 관리해야 합니다.

(7) 위생, 음식, 주거

-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취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비상구/온수/조명/난방/환기장치/사물함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8) 안전보건 교육

-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언어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건·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4. 친환경 경영

(1) 환경 관련 인허가와 보고

① 협력회사는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 및 등록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최신 법규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환경관련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오염예방과 자원사용 저감

①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 보존, 원자재 재활용과 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화학물질 관리

①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화학물질 배출 시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폐기물,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기타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재사용 및 폐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4) 폐기물

① 협력회사는 발생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식별, 관리, 저감해야 하며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대기오염 관리

① 협력회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 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기준을 준수 및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6) 제품 및 공정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① 협력회사는 재활용 및 폐기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수자원 관리

①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오염경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관련하여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적 준수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 ① 협력회사는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기업윤리 준수

(1) 투명경영

- ① 협력회사는 LS ELECTRIC의 윤리경영(실천 서약서) 방침에 따라 모든 부패 행위를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제재 절차를 실행해야 하며 모든 적용 가능한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부당이익 금지

- ① 협력회사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는 됩니다.
- ② 협력회사는 부당이익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반 부패 법령 자율준수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3) 정보 공개

- ① 협력회사는 관련 법과 규정, 업계 관행에 따라 노동·인권, 보건·안전, 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모든 정보의 보관 및 폐기 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4) 지식재산권 보호

- ① 협력회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② 협력회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LS ELECTRIC 및 LS ELECTRIC의 고객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5)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① 협력회사는 공정거래(담합 금지), 광고 및 경쟁에 관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신원 보호와 보복 금지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익명성이 보장된 신원 보호 프로그램 운영해야 합니다.

(7) 책임있는 자재 구매

- ① 협력회사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예: 무장세력이 점거한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 산림 보존 및 벌목금지 지역에서 벌목된 목재 등)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관련 정책 내에 분쟁광물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LS ELECTRIC로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에 포함된 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이하 3TG / 코발트, 운모, 아연: 이하 책임광물)이 콩코민주공화국이나 인접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을 유린하는 무장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원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는 LS ELECTRIC으로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 내 3TG/책임 광물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LS ELECTRIC의 요청에 따라 실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개인 정보 보호

- ①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공유시 개인정보보호/정보법안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1) 기업의 준수이지 표명

① 협력회사는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관련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방침 성명서를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에 현지 언어로 게시해야 합니다.

(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① 협력회사는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3)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①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포함하여 관련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여 경영 절차 내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리스크 평가와 관리

① 협력회사는 환경, 안전·보건, 노동·인권 관행 및 윤리적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각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여부 및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5) 개선 목표

① 협력회사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 이행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목표, 목표치 및 실행계획을 문서화하고,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6) 교육 및 의사소통

①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과 법규준수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임직원, 공급업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7) 임직원 참여

① 협력회사는 경영진과 임직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어 임직원들이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임직원 의견 취합 및 참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8) 감사 및 평가

- ①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 및 고객요구사항과 관련 법규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하고, 도출된 결함 등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9) 시정 조치 프로세스

- ① 협력회사는 대내외 평가 및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10) 문서화 및 기록

- ①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11) 공급업체 책임

- ①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요건을 하위 협력회사에 전달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고객 요청에 따라 협력회사에 대해 제3자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LS ELECTRIC 협력회사 행동규범

당사는 'LS ELECTRIC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하, '본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당사는 본 행동규범을 숙지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LS ELECTRIC과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LS ELECTRIC과 거래하는 협력회사로서 본 행동규범의 의무 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과 만약 해당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LS ELECTRIC이 당사에 서면 통지하여 시정 요구,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2. LS ELECTRIC 또는 LS ELECTRIC이 지정한 자가 당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설문 또는 현장 방문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영업 활동,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가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LS ELECTRIC의 요청에 협조하고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는 LS ELECTRIC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LS ELECTRIC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관련 시설, 자료, 인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본 행동규범의 위반을 즉시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당사의 하위 협력회사 또는 공급상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도 이들에게 동일하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3. 당사는 당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의 협력회사에게도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달하여 준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4. 당사는 본 행동규범이 LS ELECTRIC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공급계약과 본 행동규범 간 불일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행동규범이 우선합니다.

5. 당사는 모든 확인된 리스크와 이에 대해 취한 후속 조치에 대한 문서와 기록을 LS ELECTRIC이 요청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본 행동규범의 위반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LS ELECTRIC에 이를 통지하겠습니다.

본 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가 보관하고 1부는 귀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주식회사 LS ELECTRIC 귀중

유첨1. LS ELECTRIC 협력회사 '행동규범' 참조 자료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 V7.0, VAP Operation Manual V7.1)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

- ISO 14001

(www.iso.org)

- ISO 45001

(www.iso.org)